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2019. 9. .
발 의 자	홍난이 의원 외 4명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난이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9. 9. .

발 의 자 : 홍난이 · 김재우 · 송용자 · 이선우
이지연 의원 (5인)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권고안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겸직신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의 수의계약 제한 사항 등과 관련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지방의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겸직신고 서식을 보다 구체화 하고,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규정(안 제5조제1항)
- 나. 겸직 위반자에 대한 사임권고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4항)
- 다. 겸직 신고내용 연 1회 이상 점검 및 홈페이지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5항)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 계약체결 제한자의 신고 및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마.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바. 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조 례 안 : 붙임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나.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구미시의회의원”을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따라 구미시의회의원”으로, “한다.”를 “한다”로, “윤리실천 규범”을 “윤리실천규범”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복리의 증진”을 “복리증진”으로 한다.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아니된다”를 각각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공직자윤리법”을 “「공직자윤리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의장”을 “구미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서식에 의한다”를 “서식,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변경 신고”를 “변경신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겸직기관”을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의장은 시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시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단서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시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인 등 겸직신고) ① 시의원은 구미시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1. 구미시가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 기관·단체
2. 구미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구미시로부터 운영비·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② 의장은 시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징계 등) ① 시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

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1. 검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검직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검직사임 권고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시의원이 구미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시의원이 구미시와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검직금지 관련한 사임권고 거부
- ② 제1항에 따라 징계를 하는 경우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시의원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구미시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따라 구미시의회의원----- 한다 ----- -- 윤리실천규범 ----- -----.
제2조(윤리강령)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2조(윤리강령)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2. ----- -- 복리증진----- ----- -----.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 ----- ----- -----.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방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	1. ----- -----

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아니 된다.

2. -----

----- 아니 된다.

3. -----

----- 아니 된다.

4. -----

-- 아니 된다.

5. -----

아니 된다.

6. -----

-----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생략)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지방
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
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
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신설>

7. 「공직자윤리법」-----

-----.

8. (현행과 같음)

제5조(겸직신고) ① -----

---- 구미시의회의장(이하 "의
장"이라 한다)----- 서식,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② -----

변경신고-----.

③ -----
----- 겸
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다. <후단 삭제>

④ 의장은 시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
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시의원
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
상 점검하여 시의회 홈페이지에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
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의원
의 직업이 농업인인 경우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
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의 임직원에 한한
다.

<신 설>

<신 설>

게시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
법」-----

--.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시의원은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지
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
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
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
여야 한다.

② 시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
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
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
경신고 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인 등 겸직신고) ① 시

<신 설>

의원은 구미시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1. 구미시가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 기관·단체

2. 구미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구미시로부터 운영비·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② 의장은 시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징계 등) ① 시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1. 검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검직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되어

	<u>실시한 겸직사임 권고 거부</u> <u>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u> <u>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u> <u>발견</u> <u>4. 시의원이 구미시 및 공공단</u> <u>체와 영리목적 거래</u> <u>5. 시의원이 구미시와 계약체결</u> <u>6. 관리인 등 겸직금지 관련한</u> <u>사임권고 거부</u> <u>② 제1항에 따라 징계를 하는</u> <u>경우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른</u> <u>다.</u>
--	---

■ [별표] 징계기준 (제9조제2항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겸직신고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 위반)	경고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 영리거래금지 위반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별지 제1호 서식] 검직(변경)신고서 (제5조 관련)

연번		검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			
구미시의회의원 검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역구	
성명	한글			비례대표	
	한자		생년월일		
검직내용	기관·단체명				
	직위		기간	~	
	수행업무내역				
	분야	농수산 ☐ , 상공업 ☐ , 건설업 ☐ , 서비스업 ☐ , 교육 ☐ , 전문직 ☐ , 기타 ☐			
	영리성 여부	영리 ☐ , 비영리 ☐			
	보수수령 여부	보수수령 ☐ , 보수 미수령 ☐			
	보수수령액 (연간)	근로소득	원		
		근로소득 이외 소득	원		
계		원			
주소				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검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구미시의회의원				(인)	
구미시의회의장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제5조 관련)

구미시의회의원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소속정당			선 거 구 분	지 역 구	
성 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구미시의회의원

(인)

구미시의회의장 귀하

■ [별지 제3호 서식]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신고서 (제7조 관련)

구미시의회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

성명		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		총명							
		본인 관련자명			본인, 직계존·비속명				
		배우자 관련자명	유무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명				
					-				
연번	관계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명 (상호,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지분율	기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구미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구미시의회의원

(91)

구미시의회 의장 귀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염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⑥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6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익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나.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으로서 소유 명목과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6.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1호·제3호·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과 제2호·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 및 계약체결의 금지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자료 제출 요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3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지방의회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